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대기관리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
- 전자우편 : bat082@korea.kr
- 팩스 : 044-201-6901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 ⇒ 입법예고란)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(전화 (044) 201-6901, 팩스 (044) 201-69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환경부공고제2020-776호

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9일

환 경 부 장 관

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악취배출시설 현행화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분류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대기관리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
- 전자우편 : bat082@korea.kr
- 팩스 : 044-201-6901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 ⇒ 입법예고란)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(전화 (044) 201-6901, 팩스 (044) 201-69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043호

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

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상 호 : (주)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2. 대표자 : 도병운
3. 본점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
4. 설립자본금 : 3억원
5. 설립목적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6 소재 업무시설 (현대해상 강남사옥)을 매입 후 임대하는 사업
6. 영업인가일 : 2020년 7월 30일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106호

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

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상호 : (주)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2. 대표이사 : 오남수